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7846호, 개정 2006. 01. 11.)제13조의3제1항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시 연서 주민 수를 종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나. 주민이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발췌 별첨)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기타

(1) 제정 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조례제정 관련 검토자료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 수)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군내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 수에서 1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